본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375호

의 안 명 청년 구직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관련 제도개선

대상기관 교육부, 한국직능력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6. 9. 7.

주 문

청년 구직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관련 제도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본

【별 지】

청년 구직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관련 제도개선

2026. 9.

국민권익위원회

본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일반 현황 ····· 2

Ⅲ. 현황 및 문제점 ····· 7

1 응시료 심사기준의 실효성 부족 ····· 7

2 불리한 응시료 환불 조건으로 인한 응시자 피해 발생 ····· 11

3 지방정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각지대 존재 ····· 14

Ⅳ. 개선방안 ····· 17

1 응시료 심사배점 및 검증체계 강화 ····· 17

2 응시료 환불규정 평가(심사) 실시 ····· 17

3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범위 확대 ····· 18

Ⅴ. 조치사항 ····· 19

[붙 임] 조치 대상 지방정부 목록 ····· 20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 민원정보분석과, 2026.7.29.)** '쉬었음 청년', 구직단념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 유도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 요구

○ 최근 자격증 **응시료**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어 **청년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이러한 부담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취업 기회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 **[언론보도]** 자격증 취득 비용 줄인상…"돈 없으면 취업 준비도 눈치 보여요"(2026.4.21.)

○ 한편, **공인민간자격**은 **국가가 공신력을 부여**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한 민간자격으로,

-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취득자의 74%가 30대 이하일 만큼 **청년층의 역량개발, 취업 준비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인민간자격의 상당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응시료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

※ **최근 4년간**(2022~2026년 6월) 98개 공인민간자격 중 **36개 자격 응시료 인상**, 36개 자격의 **평균 인상률은 20.0%**,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1.3%**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불합리한 응시료 환불 조건** 등으로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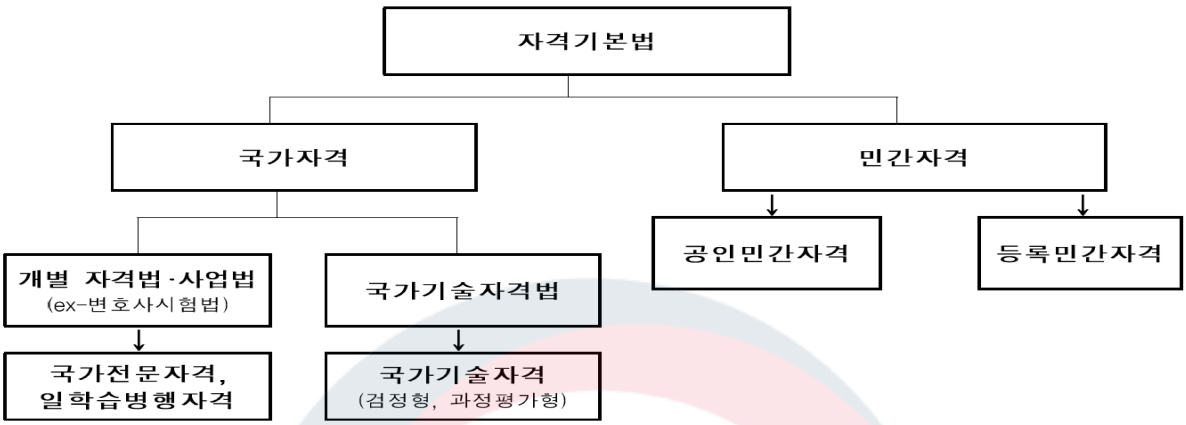
○ 이에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관련 실태조사 및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본

Ⅱ. 일반 현황

□ 자격제도 현황

○ 자격법의 구조



○ 자격 구분

- 관리·운영 및 발급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

<시행주체에 따른 자격 구분>

구 분		종목수	관련법	관계부처	자격종류(예)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540 (산업인력공단 시행 491)	국가기술자격법 (노동부)	고용노동부 (부·처·청·위원회)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과정형)	201			
	국가전문자격	209	개별법령	부·처·청·위원회	변호사, 의사, 운전면허 등
	일학습병행자격	454	일학습병행법	고용노동부	L2, L3, L4, L5, L6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98	자격기본법 (노동부,교육부)	부·처·청	전산세무회계, TEPS 등
	등록민간자격	65,051	자격기본법 (교육부)	부·처·청·위원회	병원코디네이터, 바리스타 자격 등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432	고용보험법 (노동부)	고용노동부	선박도장사, 클리닝마스터 등

본

□ 공인민간자격 개요 (「자격기본법」 제19조 ~ 제29조)

○ **(민간자격 국가공인)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민간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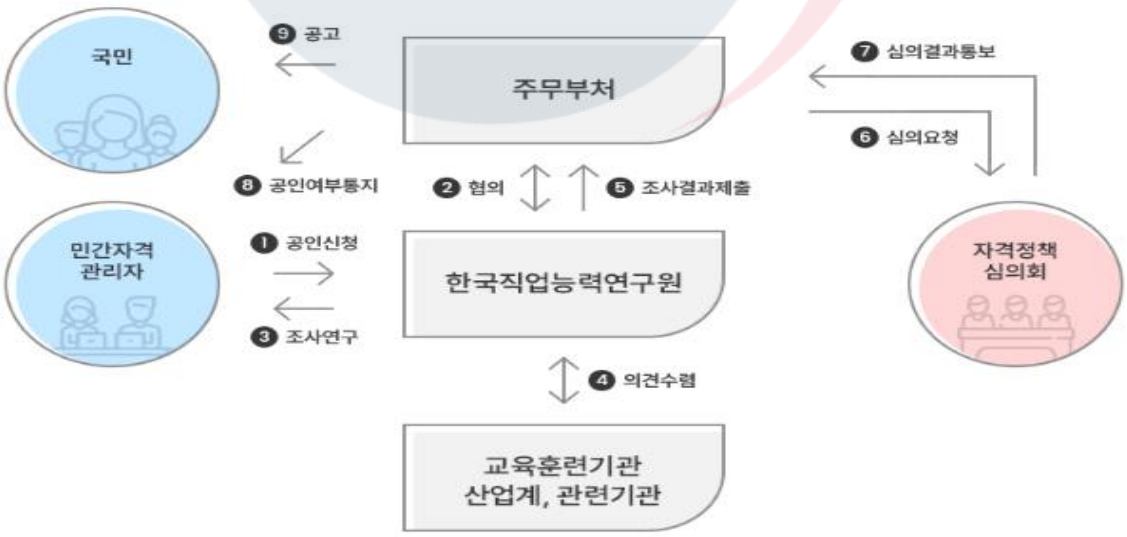
< 민간자격 국가공인 기준(「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①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것
②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③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것

○ **(공인절차)** 공인신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연구 및 의견수렴,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주무부처 공고 순으로 진행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위한 검토 및 조사 업무 등을 위탁 수행(「자격기본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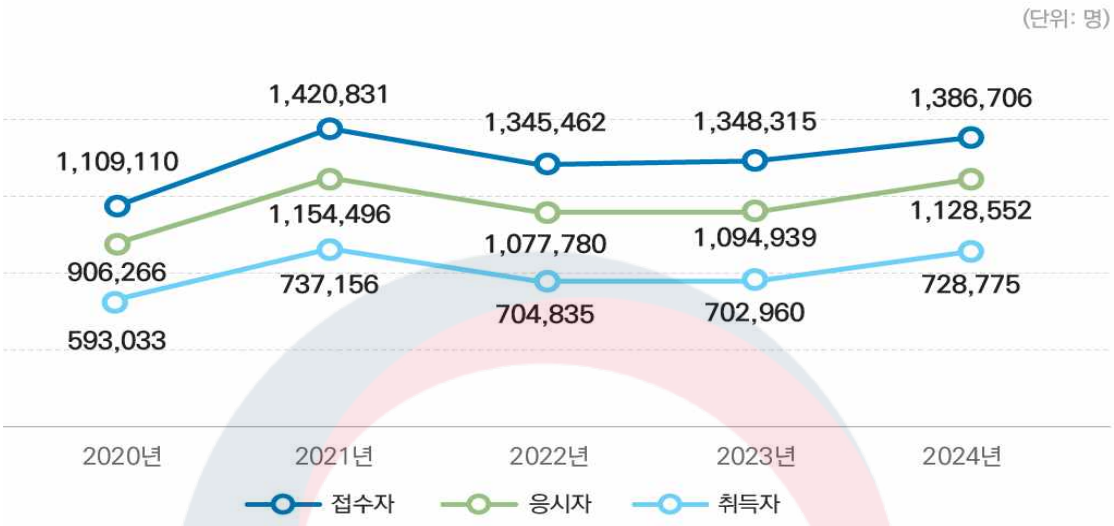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공인민간자격 현황

○ 응시자, 취득자 수 현황

- 연간 **100만 명 이상 응시**하여 **70만 명 이상 취득**하는 것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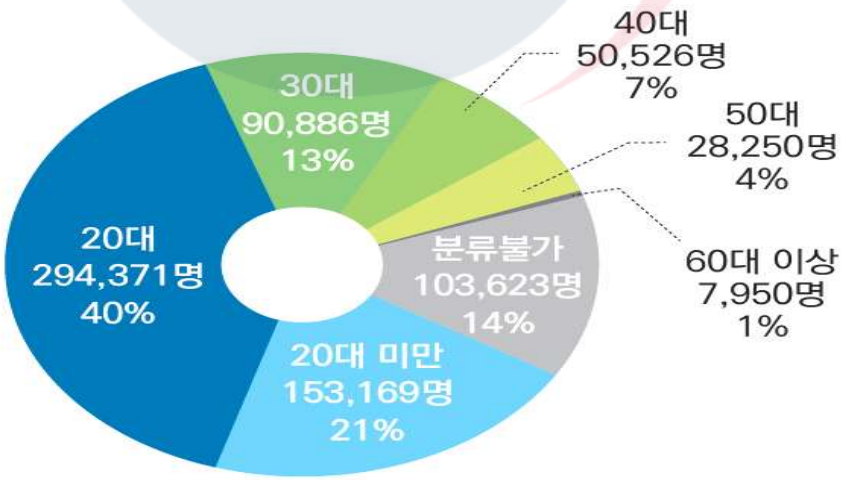
* 국가기술자격(검정형) 2024년 응시자 수 / 취득자 수 : 3,900,090명 / 704,316명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그림으로 보는 민간자격 동향(2026년)

○ 취득자 연령별 현황

- 2024년 기준, 전체 취득자의 74%가 3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되어 **주 취득 연령대가 청소년, 청년 세대**인 것으로 나타남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그림으로 보는 민간자격 동향(2026년)

본

○ 응시자 수 상위 공인민간자격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인민간자격 정보자료집(2025년)

순위	자격명(등급)	응시자 수(명)	응시료(원)
1	정보기술자격	245,068	60,000
2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82,186	60,000
3	전산세무회계 (전산회계 1급)	67,752	30,000
4	SQL(개발자)	59,202	50,000
5	데이터분석(준전문가)	57,849	50,000
6	TEPS영어능력검정	53,295	54,000
7	그래픽기술자격(1급)	41,533	42,000
8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24,454	55,000
9	재경 관리사	23,405	70,000
10	KBS 한국어 능력시험	23,242	33,000

* 응시자 수는 2024년 기준, 응시료는 2026년 7월 기준

○ 활용 사례

- 공인민간자격은 취업,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학점 인정, 경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구분	활용
취업	입사 지원 시 우대, 일부 분야 입사 지원 시 필수, 공무원 임용시험 영어 과목 대체 인정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 가산점, 생활기록부 기재 인정 등
대학교	학점 인정, 졸업 논문 및 졸업 시험 대체 인정 등
기타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현역병 지원(모병) 가산점, 승진평가 또는 인사고과 반영 등

본

□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인상 추이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4년간**(2022~2026년 6월) 98개 공인민간자격 중 **36개 자격이 응시료를 인상**

- 36개 자격의 **평균 인상률은 20.0%**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1.3%*)을 크게 초과**

* 소비자물가지수 : (2022년) 107.7 → (2026년 5월) 119.92 (11.3%↑)

<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인상 현황 >

	'22년 평균 응시료(원)	'26년 평균 응시료(원)	인상률(%)
98개 자격 전체	70,667	73,937	4.6
응시료가 인상된 36개 자격	41,396	49,667	20.0

< 인상률 상위 5개 공인민간자격 >

	'22년 응시료(원)	'26년 응시료(원)	인상폭(원)
A자격	20,000	50,000	30,000(150.0%)
B자격	23,000	35,000	12,000(52.2%)
C자격	100,000	150,000	50,000(50.0%)
D자격	22,000	32,000	10,000(40.0%)
E자격	50,000	70,000	20,000(40.0%)

○ 반면, 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488개)의 응시료**는 청년 부담 가중을 이유로 **정부가 인상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기 응시료가 **2014년 이후 동결 상태**(다만, 기능사 필기 응시료는 2020년에 인상된 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료는 실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이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본

Ⅲ. 현황 및 문제점

1 응시료 심사기준의 실효성 부족

현 황

○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인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공인을 받을 수 있음**

※ 단, 공인 이후 유효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공인자격에 한하여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없이 소관부처의 승인으로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신청서류는 재공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공인·재공인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서류를 조사(서류조사, 현장조사 병행)하여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

■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①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③공인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④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④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이하 생략)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신청 접수
2.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의견수렴 및 자료 요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공인·재공인 조사기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항목별 점수 총합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주무부장관에게 공인·재공인 추천

< 공인 조사기준(평가기준) >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6년도 민간자격 신규공인 신청편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영역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민간자격 관리운영체제 (자격분야)	자격의 필요성	운영목적	10
		자격체계의 적합성	10
	자격체계의 적합성	검정 기준	10
		검정 방법	10
		검정 과목	10
		응시 자격	5
민간자격 관리운영체제 (검정분야)	출제 및 채점 절차의 적합성	출제기준	15
		문제의 적절성	15
		출제절차 및 보안	15
		채점기준 및 절차	15
		채점관리	5
	검정시행의 적합성	검정계획 및 시행 절차	10
		시험감독	15
		시험문제 보안	15
		검정료	**5**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기관분야)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	관리 운영 조직	10
		인력	10
		시설·장비	10
		재정	10
		발전 계획	5
		자격 발급 및 등록	5
		사후관리 및 문서보관	5
합계			**220**

Pass: 항목별 D(40%)이하가 없고 세부항목별 F가 없으며, 환산점수 **총점이 70%(154점) 이상**인 경우	**Fail:** 항목별 D(40%)이하가 있거나, 세부항목별 F가 있거나, 환산점수 **총점이 70%(154점)** 미만인 경우

본

< 재공인 조사기준(평가기준) >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6년도 민간자격 재공인 신청편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영역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민간자격 관리운영체제 (자격분야)	자격의 필요성	자격의 활용도	10
	자격체계의 적합성	공인사항의 임의변경여부에 대한 평가	(적합 /부적합)
민간자격 관리운영체제 (검정분야)	출제 및 채점 절차의 적합성	출제위원(검토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5
		출제시 보안	10
		출제절차 및 문제의 적절성	10
		출제 관련 문서 및 서류	10
		시험문제 인쇄방법 및 절차	5
		시험문제 운송방법의 적절성	5
		채점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5
		채점절차	5
		채점결과 및 답안지 보관	5
	검정시행의 적합성	응시자자격(일반, 면제 등)	5
		수험원서와 연명부 관리 현황 및 일치 여부	5
		검정시행	10
		검정결과 보고	15
		시험감독위원의 공정성 및 적절성	5
		시험감독위원의 배치	5
		시험관리·감독 규정	10
		시험장의 적절성	5
		시험문제 보안	10
		검정료	**10**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기관분야)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	인력 및 조직	15
		시설 및 장비	5
		재정	15
		사후관리(자격발급 및 등록, 자격의 유효기간 등)	10
		민원 처리 업무	15
		합격기준	5
		기타사항	5
합계			**220**

Pass: 항목별 D(40%)이하가 없고 세부항목별 F가 없으며, 환산점수 총점이 70%(154점) 이상인 경우	**Fail:** 항목별 D(40%)이하가 있거나, 세부항목별 F가 있거나, 환산점수 총점이 70%(154점) 미만인 경우

문제점

○ 공인 및 재공인 심사 시 **응시료에 대한 부분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그 비중이 미미**해 평가항목으로서 **실효성 부족**

- 전체 평가항목 중 응시료의 배점이 **공인 심사**에서는 **220점 만점에 5점(2.3%), 재공인 심사**에서는 **220점 만점에 10점(4.5%)**에 불과

○ 또한, 시행기관은 **응시료 산정 관련 자료**를 심사자료로 제출하나 이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는 실정

< 공인·재공인 심사 시 응시료 관련 제출 필요 자료 >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6년도 민간자격 신규·재공인 신청편람

- 내부 혹은 외부의뢰를 통한 객관적, 체계적 방법에 근거한 검정료 산정 자료(소요비용 분석자료, 원가계산 등)
- 검정료 산정을 위한 추진실적 관련 자료(내부 위원회, 전문가 검토협의 등)
- 검정료 산정, 변경, 개편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 시행기관이 제출한 응시료 산정 자료의 객관적인 근거 및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재**

- 이에 따라 응시료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부실 자료 제출 사례(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A자격) 응시자 1인당 응시료 원가를 약 23,400원(1~3급 평균)으로 산출한 자료를 제출하여 재공인을 받았으나, 재공인 직후 응시료를 22,600원에서 32,000원으로 41.6% 인상함.
- (B자격) 연간 응시자가 5만 명이 넘는 자격이나, 1인당 응시료를 응시자 1천 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만 제출하여 재공인을 받음
- (C자격) 소요비용 항목별 표준단가와 그 근거, 수량 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대략적인 소요비용만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 재공인을 받음

2 불리한 응시료 환불 조건으로 인한 응시자 피해 발생

현 황

○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응시료 납부 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 100%, 접수기간 이후 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 이상 **환불**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규정

- 또한, 시험 당일 본인의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료 100%를 **사후에 환불**하도록 규정

○ **민간자격**의 경우 **「민간자격 표준약관」에서 응시료 환불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민간자격 표준약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2019년 1월에 제정하여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

- 국가기술자격과 비교하여 환불신청 기간과 그에 따른 환불비율은 동일하나, 사후환불은 그 사유와 환불비율에서 차이가 있음

<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 환불 조건 비교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	**민간자격** (「민간자격 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
환불기간	① 응시신청 기간(접수기간) 내 계약을 해제(접수취소)한 경우: 응시료 100% 전액 환불 ② 응시신청 기간(접수기간)이 지난 후 해당 시험시작 5일전: 응시료의 50% 환불 ※ 국가기술자격은 50% 이상 환불하도록 규정 ③ 해당시험시작 4일전부터: 응시료의 0%(환불불가) ※ 해당 조항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에만 규정	

본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	민간자격 (「민간자격 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
사후환불	■ 아래 사유의 경우 100% 환불 ① 응시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이 사망한 경우 ② 응시자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입원 또는 격리 ④ 그 밖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 등	■ 아래 사유의 경우 50% 환불 ① 응시자 본인의 군입대 ② 응시자의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이 사망한 경우 ③ 응시자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 ④ 응시자 본인의 해외출장, 해외연수 ⑤ 응시자 본인의 국내 연수(단, 시험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문제점

○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환불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많은 민간자격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 '22.1.~'25.8. 기간(3년 8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4,586건이며 이 중 환불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32건(87.9%)을 차지

○ **98개 공인민간자격**의 환불규정과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다수의 자격에서 **응시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확인**

- **(환불기간)** 환불 불가 시점을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 총 **40개 자격에서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 확인

본

< 응시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자격 현황 >

유형	자격수	예시(사례)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불리한 환불 시점 설정	25	2.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3.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4.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5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5.시험 시행일 9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취소 및 환불 불가
접수기간 이후 환불 불가	15	④ 접수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검정수수료 전액 환불 ⑤ 접수기간 후: 환불하지 않음

- **(사후환불) 총 81개 자격이 사후 환불제도가 미비하거나 전무**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

< 응시자에게 불리한 사후환불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자격 현황 >

유형	자격수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일부 사유만 인정	49
사후환불 불가	32

○ 현재 **공인 및 재공인 심사기준에 환불 관련 항목은 없으나,**

- 응시자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심사기준에 「민간자격 표준약관」에 따른 환불기준** 채택 여부를 포함할 **필요**

본

3 지방정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각지대 존재

현 황

○ **일부 지방정부**에서 **청년**의 능력 향상과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

-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수와 사업예산**은 2024년 79개 약 85억 원에서 2026년 114개 약 102억 원으로 **증가**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개요 >

구분	일반적인 내용	비고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은 지방정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대부분 미취업 청년에 한해 지원하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곳도 있음
지원 자격증	어학,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자동차운전면허 제외), 공인민간자격	· 어학, 한국사, 국가기술자격은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원 · 국가전문자격과 공인민간자격 지원 여부는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00만원 내 응시료 실비	· 지원금액은 8~30만원선 ·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횟수(1~2회)나 지원 자격증 수(1~2개)를 제한하는 곳도 있음

본

< 지방정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현황 >

연도	시행 지방정부 수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2024	79	8,514	8,006
2025	100	11,114	10,843
2026	114	10,240	-

* 일부 지방정부는 자격증 응시료뿐만 아니라 교재 구매비, 학원비, 취업 면접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격증 응시료 지원 예산만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 예산 집계에서는 제외함

○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

< 청년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개요 >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만34세 이하 청년 (1991.1.1. 이후 출생)
지원 자격증 / 지원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492개)의 응시료 50% 지원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3회 한도

문제점

○ 2026년 현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14개 지방정부 중 **32개 지방정부**에서 **공인민간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본

- 공인민간자격의 공신력 및 활용도에 대한 사업부서의 **인식 부족**, 지원 자격증 종류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미지원**

- 이로 인해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하며 **공인민간자격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 다수 발생**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 00시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현재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국가기술자격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와 □□시의 경우 공인민간자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00시도 공인민간자격에 대해서 확대 지원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5년 3월)
- □□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국가기술자격만 지원하기 때문에 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유사 사업 대비 지원 자격증의 범위가 협소합니다. 어학, 한국사, 공인민간자격 등 청년 구직 활동에 필수적인 자격증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25년 6월)

○ **공인민간자격은 국가의 공인을 통해 신뢰성과 통용성을 인정**받은 자격으로,

- 연간 취득자 수가 국가기술자격과 비슷할 정도로 **실제 구직활동**에서 직무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 (2024년 취득자수) 국가기술자격(검정형) 704,316명, 공인민간자격 728,775명

- 국가기술자격은 이미 정부에서 응시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청년층에게 **공인민간자격의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 **공인민간자격의 응시료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

본

Ⅳ. 개선방안

1 응시료 심사배점 및 검증체계 강화

○ **(심사배점) 공인·재공인 심사기준 중 '검정료' 항목의 배점을 상향**(예: 총점의 10% 이상)하여 응시료 산정의 적정성이 심사 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

- 응시료 산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다른 항목의 점수 취득과 관계없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적부심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검증체계)** 응시료 산정 근거자료 검증 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원가분석 분야)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서류 검증의 실효성 확보

- 산정 근거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심사에서 **감점**하거나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재)공인 직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응시료를 **대폭 인상**한 사례는 다음 **재공인 심사 시 불이익 조치**

⇨ **「민간자격 신규·재공인 신청편람」에 반영**

2 응시료 환불규정 평가(심사) 실시

○ 공인 및 재공인 심사 시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정한 환불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응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심사 단계에서부터 확보

* 환불 가능기간, 환불기간별 환불률, 사후환불 인정 사유 등

- 공인·재공인 심사기준에 '환불규정' 항목을 신설하거나, '검정료' 항목 심사 시 환불규정을 포함하여 심사

⇨ **「민간자격 신규·재공인 신청편람」에 반영**

본

3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범위 확대

○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증 범위에 공인민간자격을 포함**하여, 사업의 수혜자인 청년의 선택권 및 자격증 취득 기회 확대

-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기존 지원 한도·신청 횟수 내에서 지원 자격증 종류만 확대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계획 또는 공고 등에 반영**

< 지방정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계획(예시) >

□ 지원 자격증 범위

- 어학,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자동차운전면허 제외)
-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신설]**

○ **정책제안** 현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방정부는 **향후 지원사업 시행 시 지원 자격증 범위에 공인민간자격을 포함**

본

Ⅴ. 조치사항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조치기간)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간)
1. 응시료 심사배점 및 검증체계 강화	□ 공인·재공인 심사기준 중 '검정료' 항목의 배점 상향 □ 응시료 산정 근거자료 검증 시 외부 전문기관 자문 의무화 ○ 산정 근거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심사에서 감점하거나 자료 보완을 요구 ○ 재공인 직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응시료를 대폭 인상한 사례는 다음 재공인 심사 시 불이익 조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7.6월)
2. 응시료 환불규정 평가(심사) 실시	□ 공인 및 재공인 심사 시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정한 환불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	
3.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범위 확대	□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증 범위에 공인민간자격을 포함	32개* 지방정부 * 붙임 목록 참고 ('27.3월)
	□ 현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방정부는 향후 지원사업 시행 시 지원 자격증 범위에 공인민간자격을 포함	지원사업 미시행 지방정부 (정책제안)

본

붙임 조치 대상 지방정부(32개)

지역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인민간자격은 지원하고 있지 않은 지방정부
전남광주 (4)	여수시, 남구, 광산구, 무안군
부산 (8)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대구 (2)	남구, 수성구
강원 (4)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 양구군
충북 (3)	청주시, 영동군, 음성군
전북 (2)	군산시, 고창군
경북 (2)	상주시, 고령군
경남 (7)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산청군, 거창군

참고 관련 법령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③민간자격의 공인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①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③공인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④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①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①주무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하거나, 제20조에 따라 공인기간의 연장 또는 재공인을 하는 경우 공인자격관리자에게 해당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공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증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④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①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인자격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운영권을 다른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①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운영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자격관리자가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인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
2. 제20조에 따른 공인기간 및 공인기간의 연장과 재공인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인사항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변경승인
4. 제26조에 따른 공인의 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자격의 폐지
5. 그 밖에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에 소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3. 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6.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7.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조사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공인을 받으려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구성하되, 현장조사는 서류심사에서 공인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2.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체제
가.자격의 필요성
나.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의 적합성
다.자격검정의 적합성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심의요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민간자격이 제24조에 따른 공인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그 민간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민간자격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인결과의 통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공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공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공인의 통지는 공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인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공인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에 공인기간의 연장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기간 연장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계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①공인자격관리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취득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들에 대해서는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

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의 면제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는지와 공인자격의 취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계, 산업계 또는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3. 교육훈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및 평가의 기준·방법

제31조의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0. 4.]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공인 취소

제31조의3(공인 취소 등 공고)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사유
3.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폐지 또는 양도 사유
3. 자격의 종목 및 등급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의4(공인자격의 폐지 신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폐지 예정일 7일 전부터 폐지 예정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신고서에 공인증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인증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와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각각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0. 4.]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제31조의6(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3. 자격의 종목·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취소·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법 제37조제3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
3.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신고 접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재위탁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2.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여부 및 공인자격 취득에의

견본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

⑤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신청 접수
2.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의견수렴 및 자료 요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4. 제30조에 따른 자격검정 승인
5. 제31조에 따른 공인사항의 변경 승인

⑥ 교육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9월 7일

위 원 장 정 일 연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흥 주

위 원 김 바 올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위 원 김 남 주

위 원 고 춘 순

위 원 민 병 로

본

정본입니다.

2026. 9. 7.

국 민 권 익 위 원 회